

2020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제3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0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제3회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

가. 선발인원

구분	모 집 단 위		직 급	선발예정인원	비 고	
총 계				284명		
공 개 경 쟁	행 정 직 군			157명		
	행 정	일 반 행 정		7 급	142명	
		일 반 행정 (장애인)		7 급	8명	
	감 사	감 사		7 급	1명	
	세 무	지 방 세		7 급	1명	
	전 산	전 산		7 급	5명	
	기 술 직 군			48명		
	공 업	일 반 기 계		7 급	3명	
		일 반 전 기		7 급	4명	
	녹 지	산 림 자 원		7 급	3명	
		조 경		7 급	3명	
	보 건	보 건		7 급	3명	
	환 경	일 반 환 경		7 급	3명	
	시 설	일 반 토 목		7 급	12명	
		일 반 토 목 (장애인)		7 급	1명	
		건 축		7 급	11명	
		건 축 (장애인)		7 급	1명	
	방송통신	통 신 기 술		7 급	4명	
	경 력 경 쟁	기 술 직 군			66명	
수 의		수 의		7 급	6명	
약 무		약 무		7 급	8명	
지 적		지 적		7 급	2명	

구분	모 집 단 위		직 급	선발예정인원	비 고
경 력 쟁	공 업	일반화공(고졸자)	9 급	1 명	
	녹 지	산림자원(고졸자)	9 급	2 명	
		조 경(고졸자)	9 급	2 명	
	보 건	보 건(고졸자)	9 급	2 명	
	시 설	일반토목(고졸자)	9 급	6 명	
		건 축(고졸자)	9 급	5 명	
	방송통신	통신기술(고졸자)	9 급	1 명	
	시설관리	기계시설(고졸자)	9 급	18 명	
		전기시설(고졸자)	9 급	13 명	
	연구·지도직			13 명	
	학예연구	학 예 일 반 (박물관학 및 한국 근현대사)	연구사	1 명	
	공업연구	전 자	연구사	1 명	
		화 학	연구사	1 명	
	수의연구	수 의	연구사	1 명	
	보건연구	약 학	연구사	2 명	
		공 중 보 건	연구사	6 명	
농촌지도	원 예	지도사	1 명		

나. 응시자격

○ 공통 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응시연령

- 7급/연구·지도사 : 20세 이상(200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9급 : 18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기술계 고졸자 임용시험'은 고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2003.1~2월생)도 응시 가능

○ 응시결격사유 등(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2020.12.18.))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기타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면허증·학위 등

구분	직렬	직류	직급	응시자격
공 개 경 쟁	전 산	전 산	7 급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공 업	일반화공(고졸자)	9 급	국내에서 선발직류의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녹 지	산림자원(고졸자)	9 급	
		조 경(고졸자)	9 급	
	보 건	보 건(고졸자)	9 급	
	시 설	일반토목(고졸자)	9 급	
		건 축(고졸자)	9 급	
	방송통신	통신기술(고졸자)	9 급	
	시설관리	기계시설(고졸자)	9 급	
전기시설(고졸자)		9 급		
경 쟁 경 쟁	수 의	수 의	7 급	수의사
	약 무	약 무	7 급	약사
	지 적	지 적	7 급	지적 기사 이상
	학예연구	학 예 일 반 (박물관학 및 한국 근현대사)	연구사	관련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공업연구	전 자	연구사	관련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화 학	연구사	관련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수의연구	수 의	연구사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수의사 면허 소지자
	보건연구	약 학	연구사	관련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약사, 한의사, 한약사 면허증 소지자
		공 중 보 건	연구사	관련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농촌지도	원 예	지도사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생물공학,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원서접수 시에는 자격증, 면허증,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 시험 최종일 기준(2020.12.18.)으로 취득할 수 있을 경우 응시 가능

※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자격증 소지 여부는 자격증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하며, 허위로 자격증을 등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응시대상자의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라. 기술계 고졸(예정)자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선발직류 학과가 설치된 국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졸업자 및 2021년 2월 졸업 예정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학교장 추천 기준 >

- ▶ 선발예정 직렬(직류)과 직접 관련된 학과 졸업(예정)자
 - [붙임 5] 의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로서, 직무분야별 해당학과는 [붙임 6] 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9호)의 [별표 2] '직무분야별 학과'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음
- ▶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5 이내인 자
 - 졸업자 : 고등학교 3학년 성적 기준
 -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1~2학년까지 3학년 성적기준
- ※ 고등학교 재학 중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은 2학년, 졸업생은 3학년 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 하며, 인문계고 재학당시 보통교과도 학과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함 (인문계고 성적증명서 및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 ※ 추천대상자에게 성취평가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아래기준 적용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자로서 졸업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예정)자
- ▶ 졸업자의 개념
 - 고등학교 졸업(예정)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
 - 대학(전문대 포함),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의 재학·휴학 등 대학에 진학한 사실이 있는 자는 추천불가. 다만,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2020. 1. 1.현재)는 포함
- ※ 소속 학교의 장은 기준에 따라 엄밀히 판단하여 1인 1직류만 추천
 1. 생활기록부상 대학진학이 기재된 경우 해당 대학의 입학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2. 추천대상자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3. 고교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된 사람이 대학 재학·휴학 학력이 사후 발견된 경우 합격취소 및 징계면직

마. 연구·지도직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 학문 또는 관련 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로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함
 - 다만, 대학(학부)에서 비전공자라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문 및 동일 계통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이면 응시 가능
 - ‘해당 학문 또는 관련 계통의 학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속 학교장(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급된 추천서[붙임 8]에 따라 판단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학위 논문 및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함
 - ※ 해당(동일) 학과인 경우에도 반드시 학교장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천서의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교에 질의한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함
- 원서접수 시에는 자격증, 면허증,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2020.12.18.)으로 취득할 수 있을 경우 응시 가능
 - ※ 보건연구직렬의 약학직류 응시자격 요건(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접수시 관련학위 또는 자격증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반드시 본인이 선택한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변경불가)

< 연구사 응시자격 중 ‘관련분야’ 기준 >

▶ 학예연구

- 학예일반(박물관학 및 한국 근현대사) : 역사학 또는 보존과학 관련
- 역 사 학 : 사학과, 국사학과, 한국사학과, 역사교육학과, 국사교육학과, 박물관학
- 보존과학 : 문화재보존학과, 보존과학과, 문화재학과, 문화예술보존학과, 유물과학과, 문화재과학과

▶ 공업연구

- 전 자 : 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정보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
- 화 학 :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

▶ 수의연구

- 수 의 : 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생물학

▶ 보건연구

- 약 학 : 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
- 공중보건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

2

시험과목

※ 노란색 음영표시 시험과목은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임

구분	직렬·직류	직급	시 험 과 목
행정직군	일반행정 (장애인 포함)	7급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감사	7급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영학
	지방세	7급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지방세법, 회계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재정론, 지방자치론
	전산	7급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론
기술직군	일반기계	7급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기계공학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일반전기	7급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산림자원	7급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조림학, 임업경영학, 조경학
	조경	7급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사 및 이론, 조경재료 및 시공, 생태계관리 및 식물
	보건	7급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보건학, 보건행정학, 역학
	일반환경	7급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환경공학, 환경계획, 생태학
	일반토목 (장애인 포함)	7급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건축 (장애인 포함)	7급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통신기술	7급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디지털공학
	수의	7급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수의약리학
	약무	7급	필수(2) : 화학개론, 약제학 선택(1) : 약전학, 약물학
	지적	7급	필수(2) : 지적학, 행정법 선택(1) : 지적측량학, 지적법규
	일반화학 (고졸자)	9급	필수(3) : 화학,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구분	직렬·직류	직급	시 험 과 목	
	산림자원 (고졸자)	9급	필수(3) : 생물, 조림, 임업경영	
	조경 (고졸자)	9급	필수(3) : 조경학,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재료(식물 포함) 및 시공	
	보건 (고졸자)	9급	필수(3) :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일반토목 (고졸자)	9급	필수(3) : 물리, 토목일반, 측량	
	건축 (고졸자)	9급	필수(3)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통신기술 (고졸자)	9급	필수(3) : 물리, 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기계시설 (고졸자)	9급	필수(2) : 한국사, 기계일반	
	전기시설 (고졸자)	9급	필수(2) : 한국사, 전기이론	
연구·지도직	학예연구 (박물관학 및 한국 근현대사)	연구사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선택(1) : 박물관학, 민속학, 문화재관리학	
	공업연구	전자	연구사	필수(2) :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선택(1) : 컴퓨터공학
		화학	연구사	필수(2) : 화학개론, 분석화학 선택(1) : 유기화학, 무기화학, 생화학
	수의연구	수의	연구사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수의약리학
	보건연구	약학	연구사	필수(2) : 약학개론, 약제학 선택(1) : 약전학
		공중보건	연구사	필수(2) : 보건학, 역학 선택(1) : 미생물학
	농촌지도	원예	지도사	필수(2) : 재배학, 원예학 선택(1) : 토양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 전년도 대비 시험과목 변경사항 : 없음

○ 9급 고졸 경력경쟁 임용시험 출제범위

- 2020년도부터 2015년도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
- 일반토목 직류의 측량 과목은 2009년 교육과정 내용을 포함
- 건축 직류의 건축계획, 건축구조 과목은 건축일반 교과의 해당 부분에서 출제

3 시험실시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 택1형 20문항, 1문항 당 1분 기준

나.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실시

4 학교장 추천서류 제출 ※ 기술계 고졸(예정)자 구분모집 응시자만 해당

가. 제출기간 : 2020. 6. 22.(월) 09:00 ~ 6. 24.(수) 18:00

- ※ 방문제출의 경우 기간 중 점심시간(12:00~13:00)을 제외한 근무시간(09:00~18:00)에만 가능하며, 등기우편은 제출 마감일인 6. 24.(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나. 제출방법 : 해당 학교에서 추천대상자 전원의 관련서류를 제출기간 내에 제출처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 ※ 반드시 학교에서 추천서류를 취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추천대상자 개별 제출은 불가함

다. 제출서류

- ▶ 추천현황표 및 추천서 각 1부. [붙임 2, 3]
- ▶ 성적증명서 1부.
- ▶ 서약서 1부. [붙임 4] (※응시자 본인 직접 작성)
-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 생활기록부 사본 1부.

라. 제출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8(서초동 391)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공개채용팀 (우 06756)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접수	필기시험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시험장소 공고일	인성검사	면접시험	
2020.8.3.(월)~8.7(금) (취소마감일 : 8.10.(월) 18:00)	10.6.(화)	10.17.(토)	11.17.(화)	11.17.(화)	11.28.(토)	12.9.(수) ~ 12.18.(금)	12.30.(수)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 일정과 합격자 명단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및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http://hrd.seoul.go.kr>),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gosi.seoul.go.kr>)에 공고함
- 기술계 고졸(예정)자 구분모집의 경우, 학교장 추천서류를 사전에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터넷 원서접수 가능(인터넷 원서접수는 개인별 접수)
 - 학교장 추천서류 제출자라 하더라도 인터넷으로 원서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 응시포기로 간주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인성검사에 불참시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됨)
- 필기시험 성적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를 통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본인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에 회원가입후 접수
 ※ 기술계 고졸(예정)자 구분모집의 경우, 선발직류의 학과가 설치된 전국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 추천서를 제출(6.22. ~ 6.24.)한 응시자만 접수가능

나. 접수시간 : 접수기간내 24시간(단, 시작일(8.3.)은 09:00부터, 마감일(8.7.)은 18:00까지)
 ※ 문의사항은 09:00부터 18:00까지 전화 응대 안내함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 02-3488-2321~8

다. 응시수수료 : 7급, 연구·지도사 7,000원 / 9급 5,000원
 ※ 수수료 결제 방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됨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8.7.)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응시원서 접수시 저소득층 대상여부 조회 동의 및 반환계좌를 등록하여야 함(별도의 처리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라.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시 사진파일(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선택과목, 사진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다만, 모집단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취소 후 다시 접수하여야 함),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 불가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취소기간 : '20.8.10.(월) 18시까지)내에 한하여 원서접수 철회 시 응시수수료를 환불함
- 서울시가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
 - ※ 서울특별시 교육청, 타 지방자치단체 및 타기관에서 시행하는 시험은 중복접수 가능
- 편의지원이 필요한 응시자는 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임신부 포함)에 맞는 편의지원 신청이 가능함
 - ※ 붙임9. 장애유형별(임신부 포함) 응시자 편의지원 안내 참조

7 구분모집(장애인) 초과합격제

가. 대 상 : 장애인 구분모집

나. 실시방법

- 일반모집 동일 직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필기시험에 합격시킬 수 있음
 - ※ 초과합격제 적용으로 당초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합격할 경우 다음연도 장애인 구분모집에서 장애인 초과합격제를 미적용 할 수 있음

8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대 상 :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

나.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총 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 처리함
 -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 등에 확인하여야 함

나. 의사상자 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지방공무원법」 제34조2에 의한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의상자 본인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이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 ※ 1. 「지방공무원법」 제 34조의 2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6조」에 따라 의사상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2. 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상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 의사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관할 시·군·구청 등에 확인하여야 함

다.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자격증 1개, 직렬별 자격증 1개만 인정됨(최대 2개)
단, 1개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자격증과 직렬별 자격증에 공통적으로 가산 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을 가산함(본인이 신청한 분야로 인정)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전산직을 제외한 모든 직렬 해당)

직 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1%	0.5%
7급, 연구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공통적용 자격증은 2021년부터 폐지 예정

2) 행정직군 자격증 가산비율

직 렬	직 류	직 급	대 상 자 격 증	가산비율
행 정	일반행정	7급	변호사, 변리사	5%
	감 사	7급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세 무	지 방 세	7급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3) 연구·지도, 기술직군의 자격증 가산비율(수의, 약무, 지적, 학예연구, 수의연구, 보건연구, 농촌지도직 제외)

구 분	7급, 연구·지도사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기능장, 기사,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 보건직류의 임상심리사 1·2급 자격증 가산비율은 5%임
- ※ 보건연구직 약학 직류의 약사, 한의사, 한약사 자격증 가산비율은 5%임. 단, 응시자격이 관련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인 경우만 적용함
- ※ 기술직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7조 별표6에 의함 : [붙임 1] 참조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라. 가산점 적용 관련 유의사항

- ‘가’항과 ‘나’항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 위의 <‘가’항과 ‘나’>항은 ‘다’항 가산점과 각각 합산 적용함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4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gosi.seoul.go.kr>)에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를 직접 입력하여야 함(OMR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
 - ※ 다만, 재난 발생 등으로 긴급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입력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가산점 입력사항 및 등록기간

가산점 등록대상	입력사항	등록기간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대상자 여부, 증서번호, 가점비율	2020.10.17.(토)10:00 ~10.20.(화)18:00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종류, 자격번호	

10 기타사항

- 기술계 고졸(예정)자 구분모집의 경우, 학교장 추천서류를 공고된 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터넷 원서접수 가능함
-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 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자격 확인을 위해 제출한 서류는 시험 종료 후 따로 반환하지 않음
- 근무지역은 서울특별시 및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임
- 안정적인 인력운동을 위해 공개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3년간, 경력 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4년간 타 시·도,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전출)를 금지함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3조의2 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단, 경력경쟁시험은 임용유예가 허용되지 않음
- 시험실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를 통해 응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 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필기시험일 시험 종료 후 서울시 자체출제 과목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문제 및 정답가안을 공개하고 정답 이의제기에 대하여 안내함
-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 득점)한 과목이 있거나, 총점의 60% 미만으로 득점한 경우에는(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한함)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을 참고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은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5호)을 적용하여 점자문제지 제공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공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 또는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공개채용팀(☎ 02 - 3488 - 2321~8)으로 문의

2021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 안내

2021년부터 적용

-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영어 과목 ‘영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참고1,2)
 - 대체시험 : 토익(TOEIC), 토플(TOEFL), 텡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참고3)
 - 대체시험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 동일 날짜에 시행되는 지방직 공무원 7급 및 8·9급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 필기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지방자치단체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접수 불가
- 통신·정보처리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공통적용 가산점 폐지

2022년부터 적용

- 9급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고교과목 폐지 및 직렬별 전문과목 필수화(참고4)
- 9급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선택과목 조정점수제 폐지

기 존	변 경
필 수 : 국어, 영어, 한국사 선 택 : 전문2과목 + 고교3과목 + 행정학 중 2과목	필 수 : 국어, 영어, 한국사, 전문2과목 ※ 선택과목 폐지에 따른 조정점수제 폐지

2023년부터 적용

- 기술계 고졸(예정)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응시자격 변경

기 존	변 경 (2023년 시행 임용시험부터 적용)
선발직류 학과가 설치된 국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2023년의 경우)	선발직류 학과가 설치된 국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u>졸업자: 졸업일과 최종시험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u> - 졸업예정자: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2023년의 경우)

참고1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 안내

□ 대상시험 및 점수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청각장애
토플(TOEFL)		PBT 530점 이상	PBT 352점 이상
		IBT 71점 이상	-
토익(TOEIC)		700점 이상	350점 이상
텡스 (TEPS)	(2018. 5. 12. 이전에 실시된 시험)	625점 이상	375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340점 이상	204점 이상
지텔프(G-TELP)		Level 2의 65점 이상	-
플렉스(FLEX)		625점 이상	375점 이상

□ 인정범위

-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함
- 해당 검정기관에서 실시한 정규(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며,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 특정목적으로 실시한 수사·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필기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함
 - ※ 해당시험 한국 시행사에 외국에서 응시한 성적표를 보내서 공문으로 확인
- 청각장애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 표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음 ※ 영어능력검정시험 청각장애 인정범위(별첨2) 참조

□ 사전등록

-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 중 자체 유효기간이 인정기간보다 짧은 시험 (TOEIC, TOEFL, TEPS, G-TELP)의 성적을 취득한 사람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gosi.seoul.go.kr>)에 유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 성적을 사전등록 해야 함
 - 토익, 텡스, 지텔프 : 자체 성적유효기간 내 상시 등록 가능
 - 토플 : 자체 성적유효기간 내 매월 1일~10일 등록
 - ※ 유효기간 만료 한달 이내인 성적은 성적 사전등록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요청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 질의/응답에 확인글 등록 및 유선(02-3488-2321) 요청)
 - ※ 사전등록일 기준 유효기간 만료전 성적만 등록가능하며,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 ※ 플렉스(FLEX)의 경우 성적유효기간이 경과되어도 조회 가능하므로 사전등록대상 아님

참고2

영어능력검정시험 청각장애 인정범위 안내

□ 영어능력시험 듣기점수 제출 면제 대상 기준

○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 보청기 등 청력 교정을 위한 보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력 기준임

① '양쪽 귀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인 사람

② '양쪽 귀 청력 손실 60dB 이상이고 어음(말소리) 분별력 50% 이하'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
(舊2·3급으로, 종전 듣기점수 제외 대상은 그대로 인정)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청각장애의 정도가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

□ 시험별 제출 점수 기준

○ 7급 영어 기준점수

시험명	TOEFL(PBT)	TOEIC	TEPS		FLEX
			'18.5.12. 이전시험	'18.5.12. 이후시험	
7급 공채	352	350	375	204	375

□ 제출서류 등 안내

① (제출서류) 의사진단서 원본*(의사 소견서 불인정)

* 해당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1일 부터 발급된 진단서 원본만 인정

② (발급기관)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 등 청력 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

③ (의사진단서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

- (가) 면제대상 판단 기준 검사방법 ☞ [1]
- (나) 장애 정도 및 유형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 ☞ [2]
 - *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7호)에 따라 검사
- (다) 듣기점수 제출 제외 해당 여부 ☞ [3]

〈 전문의 진단서 발급 내용 예시 〉

[1] _____ () _____ ,
 [2] _____ 60dB _____ () _____ 30% _____
 [3] _____ .

□ 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

- ① (신청·제출 : 응시자 → 시·도) 해당 시험 원서접수 시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임을 표시*하고, 유효한 기간 내의 진단서 원본을 별도 안내하는 기한까지 우편(등기)로 제출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청각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舊2·3급)으로 등록된 응시자는 진단서 제출 불필요

* 예 : (체크)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
 ※ 유효한 기간 내의 진단서 원본을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주소는 원서접수 화면에서 별도 안내 예정)

- ② (대상 확인 : 시·도 → 응시자) 진단서 내용을 토대로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인지 확인 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 한해 자료 보완 요청 등 추가 안내
- ③ (인정기간)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신청한 해당 시험에 한함
 - 매 원서접수 시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임을 표시(신청)하되, 진단서는 최초 1회 제출하면 진단서 유효 기간 내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제출 불필요

□ 유의사항 등 안내

-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외 기준과 관련해 허위 또는 거짓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왜곡하거나,
- 의사 진단서 등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됨

참고3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안내

□ 기준점수(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4)

□ 인정범위

-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함
- 국사편찬위원회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며,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 성적등록 및 확인방법

- 응시원서 접수 시 인증번호·시험일자 등 입력
 - 한국사 성적 등록내용을 토대로 국사편찬위원회에 시험성적 진위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해당 수험생에게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달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은 자체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사전등록 필요 없음

참고4

지방직 9급 공채 선택과목 현황 및 개편 안내

구분		현행 선택과목	개 편(안) ※ 필수과목
직렬	직류		
행정	일반행정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 행정포함)
	법무행정	· 행정법총론, 민법총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행정법총론, 민법총칙
	재경	· 경제학개론, 회계원리,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경제학개론, 회계원리
	국제통상	· 국제법개론, 경제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국제법개론, 경제학개론
	노동	· 노동법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노동법개론, 행정법총론
	문화홍보	· 문화사, 커뮤니케이션이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문화사, 커뮤니케이션이론
	감사	· 행정법총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행정법총론, 회계학
	통계	· 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기업행정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 행정포함)
	운수	· 경영학개론, 철도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경영학개론, 철도법개론
세무	지방세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행정학개론(지방 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 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교육행정	교육행정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복지	사회복지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서	사서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속기	속기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